

# 대학원 국악학과 운영 내규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 (목적)**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국악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.

**제2조 (적용범위와 효력)**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국악학과 석·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,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.

## 제2장 입학관리

**제3조 (우수학생의 유치)** 국악학과 소속 교수들은 국악학과 석·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.

## 제3장 논문지도

### 제4조 (지도교수의 선정)

- 논문지도 교수 선정은 1기말(기간내)에 신청가능하며 논문지도교수는 연구지도과목(세미나)을 지도하게 된다.
- 1기 중간 전 신청할 교수님과 미리 상의 후 승인을 받아야한다.
- 모든 교과과정의 지도교수는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한다.
- 논문 지도교수 변경 : 석사학위과정은 논문 제출 1학기 전, 박사학위과정은 논문 제출 2학기 전에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통합과정은 박사과정을 적용하되 석사학위만을 취득하는 학생은 석사과정을 적용한다.

## 제4장 자격시험

### 제5조 (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)

종합학력시험 면제 조건 없이 수업연한 중 수강했던 과목에서 석사 2과목, 박사 4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해야 한다.

### 제6조 (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)

석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이상, 박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이상임.

시험 방법은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을 시행하며, 구두시험은 과목별로 학과 전임교원 2인이 참여하여 공동 출제 및 공동 평가임. 합격점수는 80점 이상임

- 응시자격 : 외국어 자격시험에 통과한자, 전공학점을 취득한자
- 수업연한 중 수강했던 과목 중 석사 2과목 박사 4과목을 선택해서 응시
- 불합격 시 횟수에 관계없이 재 응시 가능함

### 제7조 (외국어시험 과목)

과정	내 국 인		외 국 인	
	선택 과목수	선택 과목명	선택 과목수	선택 과목명
석사	1	영어, 중국어	1	영어, 독어, 불어, 중어, 일어, 한국어, 노어, 서반아어
박사	1	영어, 일어, 중국어, 한문	1	영어, 독어, 불어, 일어, 한국어, 노어, 서반아어

- 외국어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종합학력시험, 논문을 할 수 없다.
- 석·박사과정 상관없이 2학기부터 신청 및 응시 가능하며, 불합격 시 재 응시 할 수 있다.
- 본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대체특강을 수강 후 외국어 자격시험을 응시 할 수도 있다.

## 제5장 학위과정

### 제8조 (석사학위 과정 선택)

1안 학위작품 : 연주(논문대체)

2안 연구보고서(논문대체) : 40page 이상의 논문양식을 갖춘다.

3안 석사학위 취득방법인 논문원칙을 유지한다.

→ 위 세가지 방안을 다 수용한다.

	1기	2기	3기	4기	석사학위과정
1안					학위작품 : 연주
2안	전공	전공	전공	전공(졸업연주)	연구보고서
3안					논문

### 제9조 (석사학위 과정의 변경)

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. 단, 사유서 첨부 후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할 경우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 가능하다.

## 제6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

### 제10조 (논문심사위원)

주임교수는 학위논문 심사신청자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는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석사 3인, 박사5인 [교내 3인(전임교원, 특별교원), 교외 2인]을 추천한다.

### 제11조 (논문대체 심사절차)

예심, 본심을 시행한다.

### 제12조 (논문대체 제출)

학과로 연구논문 또는 학위작품 제작보고서(작품사진 포함 필수) 제본분과 국문 파일을 제출하며, 제본은 곁표지 하드카바 필요 없음. 학과에서 3년 동안 보관 이후 폐기할 수 있도록 내규로 정함 ※ 중앙도서관 제출 및 학위논문 온라인 등재 없음

## 제7장 학과 운영위원회

### 제13조 (의사결정 방식)

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회의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/20이상의 참석(위임 포함)과 참석 교수의 2/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